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215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0. 27.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1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1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94,056,4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056,4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보증금액

85,000,000원(이후 76,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6. 12. 30.(이후 2018. 12. 28.까지 연장됨)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9. 1. 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77,581,961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B은 1986. 1. 7. 혼인하였고, B은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89,710,000원, 월 차임 710,000원, 기간 2009. 10.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피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왔다.

마.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2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었고, 2017년 재차 갱신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은 227,52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바. 피고와 B은 2018. 5. 15. 이혼하면서 B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B에 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18. 10. 5. B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마련을 위해 F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172,884,568원을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상환하였고, B에게 이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후 B는 2018.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을 양도(이하 '이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10.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3 내지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변론 종결일 현재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94,056,4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0.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는 B과 이혼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와 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점, 2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189,710,000원이었는데, 그 중 대부분인 173,000,000원은 F조합의 대출금으로 충당되었고, 피고와 B의 이혼 무렵 위 대출 원리금 잔액은 172,884,568원으로 위 금액은 전액 피고가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변제한 점, 3 B은 피고와 혼인기간중 2008. 4. 2. 용인시 수지구 G 외 1필지 H건물 1층 1호 상가를 B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 전인 2016. 9. 3. 이를 1억 7,0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을 미리 처분하기도 하였는데, 이혼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외에는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담한 대출금 172,884,56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4 피고가 B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유일하고, 이 또한 B의 대출금 채무를 공제하면 54,639,432원(= 227,524,000원 - 172,884,568원) 정도이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가 계속 갹신되면서 보증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형성된 금액이며, 위 인상분 또한 혼인기간 중 B이 전액 부담해왔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7,524,000원에 상응한 216,000,000원을 대출받아 B의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금 인상분 납부 등에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5 피고와 B 사이의 자녀들이 비록 모두 성년에 이르렀으나 이혼후로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B은 재산분할의 의미와 함께 자녀들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더욱이 B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사 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까지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별지]

채권의 표시

임차인 소외 B과 임대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보증금 216,690,000원, 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 B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권 227,524,000원. 끝.